

#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45,104,230	22,353,127
일반회계	643,065,836	19,291,975
특별회계	102,038,394	3,061,152
공기업특별회계	71,239,311	2,137,179
상수도사업	23,164,845	694,945
하수도사업	48,074,466	1,442,234
기타특별회계	30,799,083	923,972
의료급여기금	1,914,314	57,4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200,353	36,011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29,111	6,8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262,742	37,882
수질개선관리	5,786,620	173,599
농공지구조성	3,969,500	119,085
중소기업육성자금	5,765,344	172,960
보건진료	2,015,221	60,457
농업발전기금	8,655,878	259,67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16,495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